

공 시 송 달

- 재산압류사전에고통지 -

- 공고기간 : 2016. 11. 18 ~ 2016. 12. 5
- 서류의명칭 :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
- 공고내용

연번	소유자현황		급수전위치	체납기간	체납액(원)				비고
	주소	성명			계	상수도 사용료	하수도 사용료	물이용 부담금	
1	울산 북구 중리3길 7-1	윤대훈	울산 북구 중리3길 7-1	2016.02월 ~2016.10월	316,140	195,150	115,440	5,550	

위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통지서를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를 공고하오니,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(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, ☎052)229-5752)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
2016. 11. 18.

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

